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23

발의연월일: 2022. 9. 23.

발 의 자:배현진·김성원·서일준

이용호 · 이철규 · 임병헌

정점식 · 정희용 · 조명희

최형두 · 황보승희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 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 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의안번 호 제1752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5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175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의안번호 제17518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제17512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5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522호), 「한 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 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의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란"을 ""국가유산수리" 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를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및 임시지정자연유산을 포함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문화재 원형보존"을 "국가유산원형보존"으로, "문화재 손상"을 "국가유산 손상"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 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 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국가유 산수리기능자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업"이 란"을 ""국가유산수리업"이란"으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 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란"을 ""국가유산수리 업자"란"으로, "문화재수리업의"를 "국가유산수리업의"로, "문화재수리 업을"을 "국가유산수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수리" 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이 라"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문화 재실측설계업자"라"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라"으로. "문화재실측설 계업의"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로, "문화재실측설계업을"을 "국가유 산실측설계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 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문화재수리가"를 "국가유산수리가"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문화재감리업"이란"을 ""국가유산감리업"이란"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1호 중 ""문화재감리업자"란"을 ""국가유산감리업자" 란"으로. "문화재감리업의"를 "국가유산감리업의"로. "문화재감리업을" 을 "국가유산감리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원"이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로, "문화재수리의"를 "국

가유산수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로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조 제15호 중 "문화재수리・실측설계"를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로,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고, 같은조 제16호 및 제17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하다.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 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른 임시지정자연유산

제3조의 제목 "(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을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를 "국가유산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유산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을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정책"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3.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제4조의3의 제목 "(시·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자"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자료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을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을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의 소유자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항단서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가"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로,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를 "(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으로,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

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조의2 중 "문화재수리등을"을 "국가유산수리등을"로, "문화재수리 등의"를 "국가유산수리등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을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기술자가"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가"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 험"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 격시험 중"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를 "(국가유산수리기술 자의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을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으로,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는"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으로.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의"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로,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 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 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 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 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가"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국가유산수리 분야"로, "문화재기능수리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라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다.

제12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3조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업"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을 "국가유산수리업자를"로, "문화재수리업자의"를 "국가유산수리업자의"로, "문화재수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 실적"을 "국가유산수리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

유산수리"로 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하며, 같은 조 제4항중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하며, 같은 조 제4항중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하며, 같은 조 제4항중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하다.

제1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각각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문화재수리업자 또는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를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의 종류)"를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종합국가유산수리업"으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로서"를 "국가유산수리로서"로, "문화재수리로서"를 "국가유산수리로서"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을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으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한 자 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8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을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을"을 "국가유산수리업을"로, "문화재수리업에"를 "국가유산수리업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가"를 "국가유산수리가"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가"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가"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의 발주자"를 "국가유산수리의 토급"을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으로, "문화재수리의"로, "문화재수리의 도급"으로, "문화재수리의"을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으로, "문화재수리의"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을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업을"을 "국가유산수리업을"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의 상속)"을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가"를 "국가유산수리업자가"로, "문화재수리업자의"를 "국가유산수리업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업을"을 "국가유산수리업을"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를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업"으로,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을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하는"으로, "문화재수리를 완성"을 "국가유산수리를 완성"으로, "문화재수리업자로"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문화재수리외자를"를 "국가유산수리외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로 한다.

제23조 중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을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 도급"을 "국가유

산수리 도급"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 금액"을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전문문화재수리업자"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업자"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능력"을 "국가유산수리의 능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결과"를 "국가유산수리 결과"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문화재수리한"을 "국가유산수리한"으로, "문화재수리 대금"을 "국가유산수리 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한"을 "국가유산수리한"으로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하면서"를 "국가유산수리를 하면서"로, "문화재수리를 하거"를 "국가유산수리를 하거"로, "문화재수리를 하지"로 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 결과"를 "국가유산수리 결과"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 현

장(동산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 현장(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수리 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수 리업무"를 "국가유산수리업무"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기술자"로,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전기술자는 그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기술자의"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을 "(국가유산수리의 설

제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동산문화재"를 "국가유산(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3조의3의 제목 "(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를 "(국가유산수리 현황

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 중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를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3조의6의 제목 "(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를 "(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의 완공일"을 "국가유산수리의완공일"로, "문화재수리의 종류별"을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로 하며,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와"를 "국가유산수리업자와"로, "문화재수리업자의"를 "국가유산수리업자와"로, "문화재수리업자의"를 "국가유산수리업자와"로, "문화재수리업자의"를 "국가유산수리업자와"로, "문화재수리업자의"를 "국가유산수리업자의"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을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를 "국가유산실측성계업자의"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을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국가유산수리 현장

의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문화재수리등을"로, "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7조의3의 제목 "(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를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장제3절의2의 제목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로 한다.

제37조의4제1항 본문 중 "동산문화재를"을 "동산문화유산을"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3항제2호"로, "문화재인"을 "국가유산인"으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7조의5제1항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수리 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동산문 화재를"을 "동산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동 산문화재"를 각각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 중"을 "국가유산수리 중"으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감리원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을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감리

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감리원이"를 "국가유산감리원이"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감리원에게"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에게"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문화재감리원이나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이나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로, "문화재수리와"를 "국가유산수리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 중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가"를 "국가유산수리가"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을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형"으로,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재수리협회"를 각각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을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으로, "문화재수

리협회의"를 "국가유산수리협회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을 "(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협회를"을 "국가유산수리협회를"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협회 인가"를 "국가유산수리협회 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협회 회"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을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로, "문화재수리 현황"을 "국가유산수리 현황"으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의"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등의 발주자·문화재감리원 등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의 발주자·국가유산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등에"를 "국가유산수리등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 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5호 및 제7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을 "(국가유산수리 기술자의 자격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정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 2 중 "문화재수리이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수리앱과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의"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의"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方술자"를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의"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로, "문화재수리기술자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을 "(국가유산수리 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

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 산수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 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 유산실측설계업자"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 로, "문화재수리업등을"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6 호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 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지정문화재를"을 "지정유산을"로 하며, 같 은 항 제8호의2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수리"를 "국 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 산수리업자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 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6호 중 "문화재감리원"을 각각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문화재수리등을"을 "국가유산수리등을"로 하다.

제49조제2항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1항"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1항"으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된"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된"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을"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을"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를 "국가유산수리기술

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기 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를"을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를"로,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을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한다.

제55조제2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 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 로 한다.

제56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문화재수리 관련"을 "국가유산수리 관련"으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

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 기술위원회 위원"을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시·도문화 재수리기술위원회"를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한다.

제58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을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을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9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을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등을"을 "국가유산수리등을"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등을"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0조제3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기

술자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 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시·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업자
- 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원 제1조(목적) ---- 국가유산을 -형으로 보존 · 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 실측설계 • 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 | 와 국가유산수리업------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u>"문화재수리"란</u> 다음 각 목의 | 1. <u>"국가유산수리"</u>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 · 복원 · 정비 및 손상 방 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나. 「문화재보호법」 제32조 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

개 정 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감리 ---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 과 국가유산수리업-----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 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 제32조 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

- 다. <u>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u>
 <u>재를 포함한다)와</u> 함께 전
 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의2. "보존처리"란 <u>문화재 원</u> 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 획을 바탕으로 <u>문화재 손상</u>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화학 적 조치 등의 <u>문화재수리</u>를 말한다.
- 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 학적·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u>문화재</u>의 손상 정도· 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 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 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 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문화재

<u>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u>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 따른 임시지정자연유
<u>산</u>
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및 임시지정자연유산을 포
함한다)과
1의2 <u>국가유산 원</u>
<u>형보존</u>
국가유산 손상
<u>국가유산수리</u>
1의3
국가유산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
<u>가유산수리</u>
국가유산수리기
<u>능자</u>
국가유

<u>수리기술자 자격증</u>을 발급받 은 자를 말한다.

- 3.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 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 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 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4. <u>"문화재수리업"이란</u> 이 법에 따른 <u>문화재수리를</u> 업으로 하 는 것을 말한다.
- 5. <u>"문화재수리업자"란</u> 제14조 에 따라 <u>문화재수리업의</u> 등록 을 하고 <u>문화재수리업을</u> 영위 하는 자를 말한다.
- 6. "실측설계"란 <u>문화재수리</u>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7. <u>"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u>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8.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제1

-	산우리기술사 사격증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
-	가유산수리기술자
	<u>국가유산수리에</u>
	<u>국가유산수리</u>
-	기능자 자격증
4.	"국가유산수리업"이란
	<u>국가유산수리를</u>
5.	"국가유산수리업자"란
	<u>국가유산수리업의</u>
	<u>국가유산수리업을</u>
6.	<u>국가유산수리</u>
7.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 -
	<u>.</u>
8.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라 -

4조에 따라 <u>문화재실측설계업</u> 의 등록을 하고 <u>문화재실측설</u> 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9. "감리"란 <u>문화재수리</u>에 관하 (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일반감리: <u>문화재수리가</u>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 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 고 <u>문화재수리에</u>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

나. (생략)

- 10. <u>"문화재감리업"이란</u> 이 법 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11. <u>"문화재감리업자"란</u> 제14조 에 따라 <u>문화재감리업의</u> 등록 을 하고 <u>문화재감리업을</u> 영위 하는 자를 말한다.
- 12. <u>"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u> 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 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 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 속되어 <u>문화재수리의</u>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유산실측설계
업의 국가유산실측
설계업을
9 <u>국가유산수리</u>
,
가 국가유산수리가
- 국가유산수리에
나. (현행과 같음)
10. <u>"국가유산감리업"이란</u>
11. <u>"국가유산감리업자"란</u>
<u>국가유산감리업의</u>
<u>국가유산감리업을</u>
12. "국가유산감리원"이란 국가
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
<u> 감리업자</u>
국가유산수리의
<u> </u>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13.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 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 국가유산수리-----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 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발주자"란 문화재수리, 실 14. ----- 국가유산수리, -측설계 또는 감리를 문화재수 ----- 국가유산 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도 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 | 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하는 자 국가유산수리-----는 제외한다. ----. 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15.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 ---문화재수리 ·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 국가유산수 업자 ·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 리업자・국가유산실측설계업 는 문화재감리업자를 말한다. 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 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 16. -----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 국가유산수리-----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 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

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

부터 <u>문화재수리</u>를 하도급받 은 자를 말한다.

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 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 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 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 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 다.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 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u>문화재수리등</u> 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 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

<u>국가유산수리</u>
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
<u>칙)</u> 국가유산수리,
<u>"국가유산수리등"이라</u>
한다)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수리등으
로 인하여 지정유산과
제4조(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
립) ① 국가유산수리등
에 관한 정책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국가유산수리등에 관
한 기본계획
<u>.</u>
② 국가유산수리
<u> </u>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계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

-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1. (생략)
- 2. 제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등 의 기준에 관한 사항
- 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 재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의 계 획에 관한 사항

- 4. (생략)
- 5.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품 5. ----- 국가유산수리등---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 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 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 획---.

③ · ④ (현행과 같음)

① <u>문화재수리등</u>에 관한 다음 <u>회)</u> ① <u>국가유산수리등</u>---------- 국가유산수리기술 위원회----

- 1. (현행과 같음)
- 2. ----- 국가유산수리
-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 3.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 연기념물, 명승에 대한 국가유 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 4. (현행과 같음)

- ② (생략)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u>문화재수리등</u>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u>문화재수리등</u>과 관련된 업무 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 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 로서 <u>문화재수리등</u>에 관한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u>문화재</u>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 ⑧ (생 략)
- 제4조의3(시·도문화재수리기술 저 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다

② (현행과 같음)
③
1
<u>국가유산수리등</u> -
2. <u>국가유산수리등</u>
3
국가유산수리등
4
<u>국가유산</u>
⑤ ~ ⑧ (현행과 같음)
∥4조의3 <u>(시·도유산수리기술위</u>
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문화재수리 기술위원회(이하 "시·도문화 재수리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u>「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u> <u>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u> <u>화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u> <u>문화재자료에 대한 문화재수</u> 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u>문화재수리등</u>의 품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 하는 사항
- ② 시·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 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 다.
-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한) 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 제한) ① 국가유산의 소유자 대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

<u>국가유산수</u>
리기술위원회(이하 "시·도유
산수리기술위원회"
<u>.</u>
1.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u>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u>
-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시·도자연유
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
2 <u>국가유산수리등</u>
② <u>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u> -
<u>.</u>
제5조 <u>(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u>
제한) ① 국가유산의 소유자

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문화 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 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 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을 등록한 <u>문화재수리업</u> <u>자</u>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 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은 직접 <u>문화재수리</u>를 할 수 있 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문화재</u> 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u>문화</u> 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 · 문화재수리기

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
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u>률」 제28조</u> 국가유
<u>산수리를</u> <u>국가</u>
<u>유산수리업자</u>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
가유산수리기능자
<u>국</u>
가유산의
<u>국가유산수리</u>
2
국가유산수리
<u>업자</u>
③
<u>국가유산수리</u>
④ <u>국가유</u>
산수리기술자가 국가
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
<u>자가,</u> 국가유산수리업자·국가

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있다.

-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 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재 분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 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⑥ <u>문화재실측설계업자</u>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u>문화재수리기술자</u>에 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문화재수리 제한의 예 저의 외)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
<u>기능자</u> <u>국가유산수리는 국가</u>
<u> 무형유산</u>
,
⑤ <u>국가유산수리</u>
국가유산실측설계
업자
<u>동</u> 산문화유산
국가유산
<u> 수리</u>
<u>.</u>
⑥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_
에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
외)
 국가유산수리에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 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있다.

제6조(성실의무) <u>문화재수리</u>등을 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u>문화재수리등</u>의 업무를 신의 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
 할 것
- 3. <u>문화재수리등</u>의 보고서를 성 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u>문화재의</u> 원형을 보존하고 <u>문화재수리</u>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국가유산수리
업자
<u>국가유산수리</u>
제6조(성실의무) <u>국가유산수리</u>
<u>.</u>
1. <u>국가유산수리등</u>
2.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
3. <u>국가유산수리등</u>
4
7 -1 0 21 A
<u>국가유산의</u>
<u>국가유산수리</u>

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문화재청장은 <u>문화재수리</u>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 게 할 수 있다.
 - 1. <u>문화재수리등</u>에 필요한 기준 이나 자재의 규격·품질에 관 한 사항
 - 2. <u>문화재수리등</u>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 3. <u>문화재수리등</u>의 보고서 작성 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u>문화재수리등</u>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육성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
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u>국</u>
가유산수리등을
<u>국가유산수리등의</u>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
<u>급)</u> <u>국가유산수리</u>
1 그리스가 사라도
1. <u>국가유산수리등</u>
2. <u>국가유산수리등</u>
2. <u>녹기파건무니중</u>
3. 국가유산수리등
4 <u>국가유산수리등</u>
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육성

- •보급) ① 문화재청장은 <u>문화</u> <u>재수리등</u>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있다.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 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 2. <u>문화재수리등</u>에 관한 전통기 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 범사업
- 3. <u>문화재수리등</u>에 관한 전통기 법의 교육 및 전승
- 4. <u>문화재수리등</u>에 관한 전통재 료 관련 생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설치
- 5. <u>문화재수리등</u>에 관한 전시및 작품전
- 6. 그 밖에 <u>문화재수리등</u>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 ·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 기 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u>문화재</u> 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 적으로 수급·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 략)
-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문화 재청장은 <u>문화재수리등</u>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 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② ~ ⑤ (생 략)제2장 <u>문화재수리기술자 및</u>문화재수리기능자
-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 문화 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 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 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 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 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 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 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 야 한다.
 - ② <u>문화재수리기술자</u>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국가유산수리등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
<u>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u> <u>헉</u> <u>국</u>
<u> 현</u> <u>국</u>
<u>험 국</u> <u>가유산수리를</u>
<u>현</u> <u>국</u> <u>가유산수리를</u> <u>국가</u>
<u>현</u> <u>국</u> <u>가유산수리를</u> <u>국가</u>
<u>현</u> <u>국</u> <u>가유산수리를</u> <u>국가</u>
현 국 가유산수리를 국가
현 국 가유산수리를 국가 국가 유산수리기술자
현 국 가유산수리를 국가 국가 유산수리기술자

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 (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u>문화재수리기술자</u> 자격시험 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 분하여 실시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u>문화재수리기</u> <u>술자 자격시험 중</u>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u>문화재</u>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 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⑥ <u>문화재수리기술자</u>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u>문화재수리기</u> 술자가 될 수 없다.

- 1. ~ 4. (생 략)
- 5. 제47조에 따라 <u>문화재수리기</u>
 <u>술자</u>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

·
<u>국가유산수리기술자</u>
④ 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⑤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자격시험 중
<u>국가유</u>
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
격사유)
국가유산수리
<u>기술자</u>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산수리
<u>기술자</u>

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 다)

-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재수리기술 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u>문화재수리기술자</u>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 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 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u>문화재수리기술자</u>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 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⑤ <u>문화재수리기술자</u>는 둘 이상 의 <u>문화재수리업자</u>, 문화재실측

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 (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u>문화</u> <u>재수리기술자</u>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 현 등)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 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 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 다. 다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 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 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 한 것으로 본다.
 - ② <u>문화재수리기능자</u>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
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
자등"
⑥ <u>국가유</u>
산수리기술자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
자가
국가유산수리
기능자 자격시험
<u>「무형유산 보전 및 진</u>
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u>국가</u>
<u>유산수리 분야</u>
<u>국가</u>
유산수리기능자
② 국가유산수리기능자
③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u>문화재수리기능자</u> 자격시험 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 분하여 실시한다.
- ⑤ <u>문화재수리기능자</u> 자격시험 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
 자 자격시험이나 문화재수리기
 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
 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u>국가유산수리기능자</u>
·.
④ <u>국가유산수리기능자</u>
⑤ <u>국가유산수리기능자</u>
<u>.</u>
제12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증의 발급 등) 국가유산수리기
<u>능자</u>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국가유산수리기술
자 자격시험이나 국가유산수리
<u>기능자</u>
제1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의 신고) ① 국가유산수리기술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 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 서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 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u>문화재수</u> 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 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 는 경우에는 <u>문화재수리기술자</u>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 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 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문화</u> 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다.

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②
<u>국가유산</u>
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u>.</u>
④ <u>국가</u>
유산수리기술자등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저

- ①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u>문화재수리업</u> 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④ (생 략)
 - ⑤ 제1항에 따라 <u>문화재수리업</u> 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 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제3장	<u>국가유산수리업등의</u>
	<u>운영</u>
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
	<u>등록</u>

세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
록) 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
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
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
② 국가유산수리
<u>업</u>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유산수리
업

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u>문화재수리업</u> 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 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 야 한다.
- ⑧ (생략)
- ⑨ <u>문화재수리업등</u>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 가 및 공시) ①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u>⑥</u>
국가유산수리
<u>업등</u>
·.
⑦
국가유산수리업등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유산수리업등
제14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u>평가 및 공시)</u> ①
국가유산수리
 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의
<u>국가유산수리의</u>
<u> </u>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한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u>문화재수리</u>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 전년도 실적등의 신 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조정보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

(2)
<u>국가유산수리업자</u>
국가유산수리 실적
③ 국가유산수리업자
.
④ <u>국가유산수리</u>
제1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u> 정보관리 등)</u>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
<u>국가유산수리등</u>
국가유산수리
에
②

리하기 위하여 <u>문화재수리종합</u>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u>문화</u> 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 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의 구축・운영 및 문화재수리업 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 자등이 될 수 없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문화재실측설계업 <u>자</u>만 해당한다.
 - 1. (생략)
 - 2. <u>문화재실측설계업자</u>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

<u>국가유산수리종합</u>
<u>정보시스템</u>
③
<u>국가</u>
유산수리업자등
④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
텐 국가유산수리
업자등
<u>.</u>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
 격사유)
 국가유산수리
<u>업자등</u>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자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2. <u>ㅋ/ 미 년 린 크 린/미 티/미</u>

- 2의2. <u>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u>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건축사법」(문화재실측설 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생략)
- 5. 제49조에 따라 <u>문화재수리업</u>
 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6. ~ 8. (생략)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① 제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 재수리업으로 구분한다.

2의2.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
3국가유산실측
<u>설계업자</u>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산수리
업자등
6. ~ 8. (현행과 같음)
116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① 국가유산수리업
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
국가유산수리업

- ② <u>종합문화재수리업</u>은 종합적 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두 종류 이상의 공종(工種)이 복합 된 <u>문화재수리를</u>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③ 전문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 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 ① <u>문화재수리업자</u>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② 종합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수리를
③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
유산
국가유산수리를
4
국가유산수리로서
<u>국가유산수</u>
리의 국가
<u>유산수리업자</u>
국가유산
<u> 수리기능자</u> .
세17조(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
1. <u>국가유산수리업</u>

경우

- 2.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 ②・③ (생략)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u>문화재수</u> 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 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
 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 2. ---- <u>국가유산수리업자</u>----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에는 국가유산 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국가유산 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국가유산 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 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 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 는 법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 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⑤ ----- <u>국가유산수</u> 리업-----

----.

- 6 -----

----- 국가유산수리업자등

<u>결격사유</u>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 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 지용) ①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에 관한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 1. 시행 중인 <u>문화재수리</u>의 도 급에 관한 권리·의무
 - 2. <u>문화재수리가</u>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u>문화재수리</u> 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 무
 - ② 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 제19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 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

.
제18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
용) ① 국가유산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에
1 <u>국가유산수리</u>
2. <u>국가유산수리가</u>
<u>국가유산수</u>
리의
 ② <u>국가</u>
 ② <u>국가</u> 유산수리가
<u>유산수리가</u>
유산수리가
유산수리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제49조에 따라 <u>문화재수리업</u> 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 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 3. (생략)
- 제20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① 7 문화재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의 상속인은 <u>문화재수</u> 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 ③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문화재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한다.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수리
<u>업</u>
3. (현행과 같음)
제20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① <u>국가유산수리업자가</u>
국가유산수리업자의
<u></u>
· ② 국가유산수
<u></u> 리업
③ <u>국가</u>
<u>유산수리업자</u>
<u>국가유산수</u>
리업을
레이크/도르즈 도시 레시 크림\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수 있다.

- ②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 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

<u>국가유산수리업자</u>
국가유산수리를
<u> </u>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①
<u>국가유산수리업</u>
<u>자</u>
국가유산수리
<u>에</u>
국가유산수리업자
<u>국가유산수리의</u>
3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
<u>산수리업</u>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하

경우에는 그 <u>문화재수리를 완성</u> 할 때까지는 <u>문화재수리업자로</u> 본다.

- ④ 문화재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고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3조(준용) <u>문화재실측설계업</u> <u>또는 문화재감리업</u>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 의 원칙)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 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u>문화재수리등</u>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

는 국가유산수리를 완
<u>성</u> <u>국가유산수리업자</u>
<u>로</u>
④ 국가유산수리의
<u>국가유산수리업자</u>
제23조(준용) <u>국가유산실측설계업</u>
또는 국가유산감리업
제24조(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
급의 원칙) ① 국가유산수리등-
② 국가유산수리등

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문화재수리등에</u> 관한 내용이 적힌 <u>문화재수리 도급</u> 대장, 실측설계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한다.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직접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u>문화재</u> 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여 <u>전문문화재수리업자</u>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u>종합문화재수리업자</u>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

③
국가유
산수리등 국
 가유산수리 도급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국
가유산수리를 도급받은 국가유
산수리업자는 그 국가유산수리
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u> </u>
<u>으 표그</u> 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
가유산수리의 일부를 국가유산
<u>수리</u> <u>전문국가유산수리업</u>
<u>자</u>
2
<u>국가유</u>
산수리 금액
<u>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u>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 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u>종합문화</u> 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u>전문문화</u> 재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 (생략)

-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하수급인의 <u>문화재수리</u>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 1. <u>문화재수리의</u>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u>문화재수리 능력</u>이 현저히 부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략)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u>문화재수리</u> 능 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 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 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

,
③ <u>종합국가유</u>
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
<u>리</u> <u>전문국가</u>
<u> 유산수리업자</u>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국가유산수
린
1. <u>국가유산수리의</u>
국가유산수리 능력
2. (현행과 같음)
②
<u>국가유산수리</u> -

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 지 아니하여 <u>문화재수리 결과</u>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u>문화재수리의</u>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u>문화재</u>
 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
 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생 략)
-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 급인은 도급받은 <u>문화재수리를</u>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u>문화재수리에</u> 관한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은 <u>문화재수리에</u> 대한 준공금
 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
 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

③
<u>국가유산수리 결과</u> -
국가유산수리
<u>의</u>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u>국가유산</u>
<u> 수리</u>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국가유산수리
를
<u>국가유산수리에</u>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①
<u>국가유산수리에</u>

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u>문화재</u>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 주자로부터 <u>문화재수리 대금을</u> 어음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 어 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 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 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 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 등의사정으로 도급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문화재수리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하도급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서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제

국가유
산수리한
국가유산수리 대금-
②
국가유산수리
,
③
<u>국가유산수리</u> -
]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
급인이 <u>문화재수리</u> 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1. (생략)
-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u>문화재수리한</u>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 략)

나. <u>문화재수리</u>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

T)
그리스가스리
<u>국가유산수리</u>
1. (현행과 같음)
2
2.
<u>국가유산수리한</u>
3
가. (현행과 같음)
나. <u>국가유산수리</u>

4. (생략)

②·③ (생 략)

-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①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u>문화재수리</u>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 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문 <u>화재수리</u>의 완료 또는 기성(旣 成)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 <u>문화재수리</u>가 계약 대로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u>문화재수</u> 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
지 등) ① <u>국가유산수리</u>
<u>.</u>
②
국가유산수리-
제31조(검사 및 인도) ①
가유산수리
<u>/ </u>
 @
2
<u>국가유산수리</u>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u>국가유산</u>
<u> 수리를 하면서</u>

하여 <u>문화재수리를 하거</u>나 설계 도서대로 <u>문화재수리를 하지</u> 아 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 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하수급인 변 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u>문화</u> 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문화재수리에</u> 관한 도 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절 문화재수리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기

① <u>문화재수리업자</u>(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u>문화재수리에</u> 관한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u>문화재수리</u> 현장(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u>문화재</u>

<u>국가유산수리를 하거</u>
국가유산수리를 하지 -
<u>.</u>
②
<u>국가</u>
<u>유산수리 결과</u>
<u>국가유산수리에</u>
<u>.</u>
제3절 <u>국가유산수리</u>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
<u>치)</u> ① <u>국가유산수리업자</u>
<u>국가유산수리에</u>
국가유산수리 현장(동
<u>산문화유산</u>
<u>국가유</u>

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u>문화재</u> 수리기술자는 그 문화재수리 발 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u>문화재수</u> 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u>문화재수리업을</u>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u>산수리기술자</u>
<u>국가</u>
<u> 유산수리업무</u>
<u>국가유산수</u>
리기술자 국가유산수
리 현장
② <u>국가유</u>
산수리기술자는 그 국가유산수
리
<u>국가유산</u>
<u>수리 현장</u>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4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u>종합</u>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 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 에는 해당 <u>문화재수리기술자</u>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u>문화재(동산문화재</u>는 제외한다)
- 2. (생략)
- ② (생략)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1.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u>종합</u>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
<u>유산수리</u>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
<u>승인)</u> ①
<u>국가유산</u>
<u>드</u>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
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
조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1
국가유산(동산문화유
<u>산</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 국가유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 2. (생략)
- 3. 해당 <u>문화재</u>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 ④ ~ ⑥ (생 략)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 조고) ① 제33조의2에 따라 설계 승인을 받은 자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 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u>문화재수리</u>를 착수 또는 완 료한 경우
- 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문화재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경우
- 3. 4. (생략)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부 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 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 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문 <u>화재수리</u>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 할 수 있다.
- ③ (생 략)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 저

2. (현행과 같음)
3 <u>국가유산</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국가유산수리
1. <u>국가유산수리</u>
2
국가유산
3. • 4. (현행과 같음)
②
<u>국</u>
<u> 가유산수리</u>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 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6(문화재수리의 기술지 저도) ①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한다)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기술지도의 내용을 문화재수리에 반영할수 있다.
- ④ (생략)
- 제34조(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 상책임)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 ② <u>문화재수리업자</u>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u>문화재</u> 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생 략)
-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 보책임)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③ 국가유산수리업자
	<u>국가유산수리에</u>
	<u>.</u>
	④ (현행과 같음)
제	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
11	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
	<u>국가유산수리</u>
	를
	②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 국가유
	<u>산수리</u>
	,
	④ (현행과 같음)
제	35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
	<u>담보책임)</u> ① <u>국가유산수리업자</u>
	국가유산수리

⑦ (혀해과 간으)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당보책임이 있다.

- ②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가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주자가 제공한 <u>문화재수리</u>
 재료로 인한 경우
-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u>문화</u> 재수리를 한 경우
- 3. 발주자가 <u>문화재수리</u>의 목적 물을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문화재</u>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u>문화재수리업</u>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

의 완공일
<u>국가유</u>
산수리의 종류별
② 국가유산수리업자
<u>국가유산수</u>
리업자
1 <u>국가유산수</u>
린
2 <u>국가</u>
<u>유산수리</u>
3 <u>국가유산수리</u>
③ <u>국가유</u>
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수리
업자의

른다. 다만, 그 특약에서 하자담 보책임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 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 한 것으로 본다.

-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 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 술자는 필요 시 문화재실측설계 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문화재실측설계업 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

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제36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
<u>성)</u> ① <u>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u>
급받은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를 국가유산수리
② <u>국가유산수리 현장</u>
국가유산기술자는 국가유산수
린
<u>국가유산수리</u>
<u>기술자</u> 국가유산실측설
계업자의
국가유산실측설계업
<u> </u>
 ③ 국가유산수리 -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문화</u> <u>재수리</u>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u>문화재수리</u>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다르게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④ 국가
유산수리
 ©
⑤ 국가유산수리
·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u>등)</u> ①
그기 이 시스기 이
<u>국가유산수리의</u> <u>국가유산수리 현</u>
<u> </u>
국가유산수리등을
<u> 기/ 기 기 년 기 년 0 년</u>

에는 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u>문화재가</u> 원형 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고증, 양식, <u>문화재수리</u>의 기 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생 략)
- 제37조의2(문화재수리 현장의 공 개) ① 발주자는 문화재수리 현 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 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u>문화재수리</u> 현장 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u>문화</u> 재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생략)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
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
<u> 감리원</u>
② <u>국가유산이</u>
1 <u>국가유산수리</u>
2. (현행과 같음)
게 27고 이 2/그 기 0 시스 기 처 자 이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제37조의2 <u>(국가규산무리 현정의</u> <u>공개)</u> ① <u>국가유산수리</u>
<u>공개)</u> ① <u>국가유산수리</u>
공개) ①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 2
공개) ①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 ② 국가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문화	④ <u>국가유</u>
<u>재수리</u>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산수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문화재수리 정보의 공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u>개)</u>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	<u>공개)</u>
사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	
계승인한 문화재수리에 관한 다	<u>국가유산수리에</u>
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
<u>템</u> 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u>텐</u> .
1. 해당 <u>문화재수리</u> 의 개요	1 <u>국가유산수리</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3
는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u>국가유산수리</u>
제3절의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3절의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등은 <u>동산문화재</u>	등) ① <u>동산문화유산</u>
를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	<u> </u>
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
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	
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	
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박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	②

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u>동산문화</u> <u>재</u>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승인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 ① 소유자등은 <u>동산문화재</u>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문화재수리업자</u>로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 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생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
<u>호</u>
<u>국가유산인</u>
 「
③ <u>동산문화유</u> 산
<u>'U</u>
<u>.</u>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① <u>동산문화유산</u>
<u>국가유산수리업자</u>
2
<u>.</u>
1. (현행과 같음)

2.	<u>동산</u>	문화재	를	파손하거나	원
Č	형을	훼손한	た] 우	

- 3. (생략)
- ③ <u>동산문화재</u> 보존처리의 기술 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6을 준용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u>동산문화</u>잭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 자는 그가 발주하는 <u>문화재수리</u>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u>문화재감리업자</u>로 하여금 일반 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u>문화재수리 중</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문화재수리에</u>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2. <u>동산문화유산을</u>
3. (현행과 같음)
③ 동산문화유산
④ <u>동산문화유</u>
산
,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u>국가유산수</u>
리
<u>국가유산감리업자</u>
<i></i>
국가유
<u></u> 산수리 중
<u> </u>
③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u>문</u> <u>화재수리</u>의 대상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④ <u>문화재감리업자</u>(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u>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u>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⑤ <u>문화재감리업자</u>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 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⑥ (생략)
-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 저 령 등) ① 문화재감리원은 문화 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설

<u>국</u>
<u>가유산수리</u>
④ 국가유산감리업자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
<u> 수리</u>
⑤ <u>국가유산감리업자</u>
,
⑥ (현행과 같음)
7
<u>국가유산감리원</u> -
 제20ㅈ(구가우사가리의이 제시해
제39조 <u>(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u> <u>명령 등)</u> ① <u>국가유산감리원은</u>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

계도서·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 게 <u>문화재수리를</u>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u>문화재감리원</u> 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 한 지시를 받은 <u>문화재수리업자</u>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 시에 따라야 한다.

- ③ <u>문화재감리원</u>은 제1항에 따라 <u>문화재수리업자</u>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u>문화재수리</u> 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 ④ 발주자는 <u>문화재감리원</u>으로 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 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 조조치) ① 발주자는 문화재감리 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 부실하

<u> 수리</u>
국가유산수리를
② 국가유산감리
<u>원</u>
국가유산수리업
<u> </u>
③ 국가유산감리원
국가유산수리업자
<u>국가유산수</u>
리의
④ <u>국가유산감리원</u>
세40조(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
정조치) ① 국가유산감
리원이
<u>국가유산수리</u>

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 화재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u>문화재감</u> 리원이나 문화재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u>문화재감리업자</u>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41조(감리의 제한) <u>문화재수리</u> 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u>문화재</u> 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 3. (생 략)
 - 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 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 항에 따라 직접 <u>문화재수리</u>를 하는 경우
-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 재단의 설립 등)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국가유산감리원에게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
<u>가유산감리원</u>
②
국가유산
감리원이나 국가유산감리원
국가유산감리업자
<u>.</u>
제41조(감리의 제한) <u>국가유산수</u>
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
<u>국가유</u>
산수리와
1. ~ 3. (현행과 같음)
4
<u>국가유산수리</u> -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
재단의 설립 등) ①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1. ~ 3. (생략)
- 4.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의 중 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 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5. ~ 8.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u>문화재수리가</u>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하여금 <u>문화재수리를</u> 하게 할수 있다.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 ① <u>문화재수리업자등</u>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u>문화재수</u> 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u>문화재수리협회</u>를 설립할 수 있 다.
- ② 문화재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u>.</u>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5
<u>국가유산수리가</u>
국가유산수리를
<u>.</u>
제42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
<u>수리등</u>
국가유산수리협회
그/ 년 뇌 건
 ② 그리스가스리워크
② 국가유산수리협회

- ③ 문화재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u>문화재수리협회</u>의 회원 자격 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 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 ⑤ <u>문화재수리협회 정관</u>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u>문화재수리협</u> 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 가절차 등) ① 문화재수리협회 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 이 있는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 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문화재 수리업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 을 작성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협회 인가를 신청하 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③ <u>문화재수리협회</u>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44조(「민법」의 준용) ① (생

③ <u>국가유산무리엽회</u>
④ 국가유산수리협회
· - 그리 () 사스키철된 기괴
⑤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
국가유산수리
협회의
·
제43조(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국가유산수리
협회를
<u>н т с</u>
<u>국가유</u>
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수리협회 인가
<u>.</u>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유산수리협회
제44조(「민법」의 준용) ① (현

략)

② <u>문화재수리협회</u>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 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그업무 및 문화재수리 현황 등에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등의 발주자·문화재감리원 등 문화 재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문화 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문화재청

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수리협회
ll 45조(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u> 등)</u>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 -
국가유산수리 현황
국가유산
수리업자등의
② (현행과 같음)
3
국가유산수리등
의 말수사•국가유산삼리원 등
의 발주자·국가유산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등 국가
국가유산수리등 국가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u>문화재수리업자</u>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 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u>문</u> <u>화재수리</u>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 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3. ~ 4의2. (생 략)
- 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u>문화재수리</u> 보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6. (생략)
-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 ② 문화재청장은 <u>문화재수리기</u> <u>술자나 문화재감리원</u>이 제53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

국가유산수리업자
<u> 드</u>
1. (현행과 같음)
2 <u>국</u>
<u> 가유산수리</u>
3. ~ 4의2. (현행과 같음)
5
<u>국가유산수리</u>
6. (현행과 같음)
7
국가유산수리
② 국가유산수리
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

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 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u>문화재수리</u>등을한 경우

4의2. (생략)

-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u>문화</u> 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u>문화재수리등</u>의 업무를 한경우
- 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제4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
<u> 격취소 등)</u> ① <u>국가</u>
유산수리기술자
1. •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정국가
유산
4
<u>국가유산수리</u>
4의2. (현행과 같음)
5 <u>국가</u>
<u>유산수리기술자</u>
7-1012
<u>국가유산수리등</u>

될 수 없는 경우

-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u>문화재수리등</u>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7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대여한 경우
- 8.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이상의 <u>문화재수리업자등</u>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8의2. (생략)

-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u>문화재수리</u>현장을 이탈한 경우
- 10. (생략)
- 11.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u>문화재감리원</u> 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 를 수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u>문화재수리기</u> <u>술자의</u>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u>문화재</u> 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7
국가유산수리등
7의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8
<u>국가유산수리업자등</u>
8의2. (현행과 같음)
9
국가유산수리
10. (현행과 같음)
11
국가유산감리
원
② <u>국가유산수리</u>
<u>기술자의</u>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u> </u>
· ③

<u>문화재수리기술자의</u> 자격을 정지할 경우 <u>문화재수리기술자 자</u> <u>격증</u>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 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 소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기 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제48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저 취소 등)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7조 (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u>자격증</u>
4
국가유산수리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⑤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국가유산수리
기술자에
1. ~ 3. (현행과 같음)
제48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
격취소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
<u>.</u>
제49조 <u>(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u>
록취소 등) ①

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u>문화재</u>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한 한다.

- 1. (생략)
- 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u>문화재수리</u>등을한 경우

2의2. ~ 4. (생 략)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들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제외한다]. 다만,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

<u>국가유</u>
산수리업자등
·
1. (현행과 같음)
2
<u>국가유산수리</u>
2의2. ~ 4. (현행과 같음)
5
<u>국가유산실</u>
<u> 측설계업자</u>
<u>국가유산수</u>
<u>리업자등</u>
<u>국가</u>
유산수리업등을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 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 8. <u>문화재수리</u>등을 하는 중에 <u>지정문화재를</u> 파손하거나 원 형을 훼손한 경우
- 8의2.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 측설계로 인하여 <u>문화재의</u> 가 치를 훼손하거나 <u>문화재수리</u> 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6.		
		<u>국가유산수리</u>
	어 <u>ㅂ</u>	
7.		
		<u>국가유</u>
	<u>산수리</u>	
8.	국가유산수리	
	지정유산을	
8	의2	
		국가유산의 -
	리	

- 9. <u>문화재수리업자등</u>이 다른 사람의 <u>문화재수리기술자</u> 자격 중 또는 <u>문화재수리기능자</u>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10. (생략)
-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u>문화재</u>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12. 13. (생략)
- 14.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u>문화재감리원</u> 배치기준을위반한 경우
- 15. (생략)
- 16. 제39조제2항에 따른 <u>문화재</u> <u>감리원</u>의 재시행·중지명령이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 17. <u>문화재수리업자등</u>이 등록한 업종 외의 <u>문화재수리등을</u> 한 경우
- 18.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문화재</u>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

9. <u>국가유산수리업자등</u>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10. (현행과 같음)
11 국가유
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12.・13. (현행과 같음)
14
국가유산감리원
15. (현행과 같음)
16 <u>국가유</u>
산감리원
<u>산감리원</u>
<u>산감리원</u>
<u>산감리원</u>
산감리원
<u>산감리원</u>
 17. <u>국가유산수리업자등</u> <u>국가유산수리등을</u> - 18. (현행과 같음)

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 면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 록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④ (생략)

제50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

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생략)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제51조(수수료) ①----

③
국가유산수리등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1
<u>항</u>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u>등록된</u>
<u>.</u>
④ (현행과 같음)
∥50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도급
받은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하도급
한 국가유산수리
② (현행과 같음)
NE1フ(入入コ)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u>문화재수리기술자</u> 자격시험 에 응시하는 자
- 2. 제10조제2항에 따라 <u>문화재</u>
 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
 을 신청하는 자
- 3. <u>문화재수리기능자</u> 자격시험 에 응시하는 자
- 4. 제12조에 따라 <u>문화재수리기</u><u>능자</u>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의2. (생략)

- 5. 제14조제1항에 따라 <u>문화재</u><u>수리업자등</u>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 6. 제14조제8항에 따라 <u>문화재</u> 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 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u>문화</u><u>재수리</u> 능력의 평가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자
- 8.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u>문화</u> 재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2 국가유산
<u> 수리기술자</u>
3. <u>국가유산수리기능자</u>
4 <u>국가유산수리</u>
기능자
4의2. (현행과 같음)
5 <u>국가유산</u>
<u> 수리업자등</u>
6 국가유산
<u> 수리업자등</u>
7 국가
유산수리
8 국가
 <u>유산수리</u>

자

② (생략)

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 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 제53조(전문교육) ①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 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 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 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범위와 전문교 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 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 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전문교육 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 설 금지) -----국가유산수리업자등-----1. · 2. (현행과 같음) 제53조(전문교육) ① 국가유산수 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등-----(2)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 유산감리원을 ----- 국가유산 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

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

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u>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u> <u>감리원에게</u>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재청장은 <u>문화재수리기</u> <u>능자</u>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 재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 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 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그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 과가 우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 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대하 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
가유산감리원에게
④ 국가유산수리
<u>기능자</u>
제5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
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수리의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
계를
국가유산수
리 또는 실측설계 중
②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수 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 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55조(청문) 문화재청장이나 시 지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47조에 따른 <u>문화재수리기</u> 술자의 자격취소
- 3. 제48조에 따른 <u>문화재수리기</u> <u>능자</u>의 자격취소
- 4. 제49조에 따른 <u>문화재수리업</u> 자등의 등록취소
-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7 (생 략)
 -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
(③ (현행과 같음)
(4
-	
	<u>국가유산</u>
-	<u> 수리 현장</u>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
,	산실측설계업자
-	
(· ⑤ (현행과 같음)
	55조(청문)
^ ;	30年(3年)
-	
-	
	1. (현행과 같음)
4	2 <u>국가유산수리</u>
	<u>기술자</u>
(3 <u>국가유산수리</u>
	<u>기능자</u>
4	4 <u>국가유산수리</u>
	<u>업자등</u>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제8조에 따른 <u>문화재수리기</u>
 <u>술자</u>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 5. 제11조에 따른 <u>문화재수리기</u><u>능자</u>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 6. (생략)
- 7. 제14조의2에 따른 <u>문화재수</u> 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 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 8. 제14조의3에 따른 <u>문화재수</u> 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u>문화</u> 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제 공, <u>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u> 템의 구축·운영
- 9. 제36조제5항에 따른 <u>문화재</u> 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 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공개
- 10. 제53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 10. -----

1. ~ 3. (현행과 같음)
4 <u>국가유산수리</u>
기술자
5 국가유산수리
기능자
6. (현행과 같음)
7 국가유산
<u></u> 수리
8 국가유산
<u>수리업자등 국가</u>
<u> 유산수리 관련</u>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
스템
<u> </u>
<u> 수리</u>

국가유

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
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 1. 제4조의2에 따라 <u>문화재수리</u>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제4조의3에 따른 <u>시·도문화</u> <u>재수리기술위원회</u>의 위원을 포함한다)
- 2. (생략)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 록을 하고 <u>문화재수리업</u>등을 영위한 자
 - 2. (생략)
 - 3.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u>산수리기능자</u>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1 <u>국가유산수</u>
<u>리등</u>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u>시·도유산</u>
수리기술위원회
2. (현행과 같음)
2. (U 89) E B)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1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u>문화재수</u>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자 또는 다른 <u>문화재수리기술자·</u>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u>문화재수리등의 업</u>무를 한 자

3의2. (생략)

- 4.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를 위반하여 <u>문화재수</u> 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 1의2. 제37조의4제1항을 위반하 여 <u>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u>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제37조 의5제1항을 위반하여 <u>동산문</u> <u>화재 보존처리를</u> 수행하도록 한 자
 - 2. 삭 제
 - 3. 제10조제5항(제12조에서 준

<u>국가유산</u>
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u>국가유산수리기술자·</u>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수리등의 업
무를 한
<u></u>
3의2. (현행과 같음)
4
<u> </u>
가유산
제59조(벌칙)
,
1 <u>국가유산</u>
<u>수리</u>
1의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
<u>획</u>
 동산문
화유산 보존처리를
3
3

용경	하님	=	경우	를	平	함한	다)	을
위병	반경	하여	둗	이성	나의	<u>문호</u>	<u></u>	수
리 역	겁 /	아등	에	중복	하ㅇ	1 7	취업	한
자								

- 4.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 재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 5. (생략)
-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u>문</u> <u>화재감리업자</u>로 하여금 일반 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 7. 제41조를 위반하여 <u>문화재수</u> <u>리</u>와 감리를 함께 한 자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4	
<u>산수리등을</u>	
유산수리업자등	
 5. (현행과 같음) 6	
7 <u>수리</u> 60조(벌칙)	
 1.·2. (현행과 같음)	

-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u>문</u> 3 <u>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u>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4. 제37조제1항에 따른 <u>문화재</u>
 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 (생략)
-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 5. (생 략)
 -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u>문화재수리</u>현장을 이탈한 자
 - 6의2. ~ 10. (생략)
 - ② (생 략)

3 <u> </u>
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
<u> 수리</u>
4 국가유산
<u> 수리</u>
5. (현행과 같음)
제62조(과태료) ①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유산수리
6의2.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